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 ~ 제2조)
- 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을 정함(안 제3조 ~ 제4조)
- 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정함(안 제5조)
- 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를 정함(안 제6조 ~ 제7조)
- 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를 정함(안 제8조 ~ 제9조)
- 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공동육아나눔터 기능을 정함(안 제10조 ~ 제11조)
- 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비용의 지원을 정함(안 제12조 ~ 제13조)
- 아. 지도·감독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 제11조, 제19조, 제20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제3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공동육아나눔터”란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6.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2장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만 3개월에서 만 7세 이하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구미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한부모 가정 및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구미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사회복지급여 신청(변경)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제10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시장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육아나눔터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제12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지도 및 감독 등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에 대해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미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유형	소득 기준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본인부담금 지원율 (시비)
한부모 가정 및 세 자녀 이상 가정 시간제A형 이용 시 (일반형 기준)	가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	100%
	나형		100%
	다형		60%
	라형		20%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라형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해 지원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 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

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

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구미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을 해소하고자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20%~100% 까지 차등 지원하며, 연간 720시간 이내에서 부담액을 산정함.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구미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비용은 총 307,650천원으로 5년간 연평균 339,992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지원내용 : 만 3개월에서 만 7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 지원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한부모 및 세자녀 이상 가정

나. 연도별 재정소요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세출	소 계	307,650	323,032	339,184	356,143	373,950	1,699,961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307,650	323,032	339,184	356,143	373,950	1,699,961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지원대상자 산출내역

- 2018년 구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 및 세 자녀 가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한 아동은 215명으로, 10%를 추가하여 지원 대상으로 추계한 결과 총 236명으로 산출함

나. 2020년 소요예산 307,650천원 산출 내역

(단위 : 원)

구분	이 용 아동수 (명)	이 용 요 금 (시간당)	정부 지원	본인부담금			월평균 이 용 시 간	평 균 이 용 월 수	소 요 예 산 (천원)	비 고
				소계	자부담	시비 지원				
총계	236	960	1,448 ~ 8,203	1,447 ~ 4,921	0	1,447 ~ 4,921	60	12	307,650	

※ 본인부담금 시비 지원 : 가형·나형 100%, 다형 60%, 라형 20% 차등 지원

5. 재원조달 방안

가. 부문별 재원부담계획(시비 100%)

(단위 : 천원)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구 분	소 계	307,650	323,032	339,184	356,143	373,950	1,699,961
	자체수입 시 비	307,650	323,032	339,184	356,143	373,950	1,699,961

※ 재원부담계획은 매년 5%씩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여 산출함

나.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시비 확보

6. 부대의견 : 없음

7. 작 성 자 : 아동보육과 지방사회복지서기 김민정(054-480-6553)

소관 실·과		아동보육과
입 안 자	과 장	황 은 채
	담 당	정 명 자
	담 당 자	김 민 정 (480-6553)